



창원레포츠파크 회의실

2025. 9.24.(수), 15:00

## 2025년 창원레포츠파크 제2회 이사회

# 의 결 과

○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가결
○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가결
○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가결
○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가결
○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가결
○ 경륜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가결
○ 경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원안가결
○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	원안가결



의안번호	제1호
의안제목	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 사회 부의 안

## 1. 제안이유

- 2025년 1~3/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결과 반영**
  - 정근수당, 가족수당 일부개정 및 업무대행수당 신설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-2806(2015. 6.29.)호 반영**
  - 평균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 포함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반영(2025. 1. 3.)
-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 및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, 「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 근거**

## 2. 주요내용

### 제3조(용어의 정의)제6호 일부개정

- 제3조제8호 : 평균임금 범위 누락분(장기근속수당 가산금) 정정 및 가족수당 추가

당 초	8. "평균임금"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, 경주수당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직책수행비, 시간외수당, 연차수당, 기말수당, 출납수당, 특정업무수행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,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하계체력단련비, 봉급조정수당,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개 정	8. "평균임금"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가족수당, 경주수당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직책수행비, 시간외수당, 연차수당, 기말수당, 출납수당, 특정업무수행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,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하계체력단련비, 봉급조정수당,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
## □ 제43조(가족수당)제1항제2호 일부개정

- 첫째 자녀 : 당초) 월 3만원 ⇒ 개정) 월 5만원
- 둘째 자녀 : 당초) 월 7만원 ⇒ 개정) 월 8만원
-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: 당초) 월 11만원 ⇒ 개정) 월 12만원

## □ 제46조의5(업무대행수당) 신설

### ○ 지급대상

- 병가, 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직, 공무상 질병 휴직한 직원의 업무를 실제 대행하는 직원
- 병가·휴가·육아휴직 : 30일 이상 / 공무상 질병 휴직 : 6개월 미만

### ○ 지급방법

-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업무대행지정 직원 수로 나누어 지급
- 이사장이 업무대행직원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업무대행직원, 대행기간, 대행업무를 명시하고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

## □ [별표 7] 제수당 지급기준표 중 정근수당란 일부개정

### ○ 근무연수 4년 미만 저 연차 직원 정근수당 지급률 상향

- 1년 미만 : 당초) 미지급 ⇒ 개정) 10%
- 1년 이상 2년 미만 : 당초) 5% ⇒ 개정) 10%
- 2년 이상 3년 미만 : 당초) 10% ⇒ 개정) 20%
- 3년 이상 4년 미만 : 당초) 15% ⇒ 개정) 20%

### ○ 근무연수 5년 미만 저 연차 직원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

- 당초) 미지급 ⇒ 신설) 30,000원

## 3. 참고내용

---

### □ 신·구 조문 대비표 및 신·구 별표 대비표

### □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
##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25. 6. 2.]

### [별표 2] 정근수당 지급구분표 <2025. 1. 3.>

#### 1. 정근수당

근무연수	지 급 액	근무연수	지 급 액
2년 미만	월봉급액의 10% 해당 금액	8년 미만	월봉급액의 35% 해당 금액
5년 미만	월봉급액의 20% 해당 금액	9년 미만	월봉급액의 40% 해당 금액
6년 미만	월봉급액의 25% 해당 금액	10년 미만	월봉급액의 45% 해당 금액
7년 미만	월봉급액의 30% 해당 금액	10년 이상	월봉급액의 50% 해당 금액

#### 2. 정근수당 가산금

근무연수	월지급액	비 고
	전 공무원	
20년 이상	100,000원	(추가 가산금) •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,000원을,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
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
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
5년 미만	30,000원	

**제10조(가족수당)**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,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17. 1. 6., 2023. 1. 6., 2025. 1. 3.>

1. 배우자: 월 4만원

2. 자녀

가. 첫째 자녀: 월 5만원

나. 둘째 자녀: 월 8만원

다. 셋째 이후 자녀: 1명당 월 12만원

3.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: 1명당 월 2만원

**제14조의2(업무대행수당)** 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6제3항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, 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직,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(병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·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,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)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6. 6. 28., 2017. 1. 6., 2020. 8. 25., 2025. 1. 3.>

##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
- 제88조(업무대행공무원)** ①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때는 ‘피업무대행공무원’, ‘대행기간’, ‘대행업무’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③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. (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한다)
- ④ 업무대행기간의 만료, 출산휴가·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,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,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##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-2806(2015.06.29.)호

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

##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사례

- Q. (질의) 퇴직금 지급관련 평균임금 계산 시 가족수당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. 회사수당 규정 상 부양가족 종류,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,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A. (답변)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

##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호 중 “장기근속수당”을 “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, 가족수당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첫째 자녀 : 월 5만원

나. 둘째 자녀 : 월 8만원

다. 셋째 이후 자녀 : 1명당 월 12만원

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5(업무대행수당) ① 병가, 출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직, 공무상 질병휴직(병가, 휴가,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0일 이상,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)의 업무를 실제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업무대행직원 수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이 업무대행직원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업무대행직원, 대행기간, 대행업무를 명시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복직, 복귀, 전보,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업무대행직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별표 7 중 정근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지급율 및 지급금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근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, 7월 월 봉급액 및 근무연수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제한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</li> <li>지급기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무연수</th> <th>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년미만</td> <td>10%</td> </tr> <tr> <td>1년이상 2년미만</td> <td>10%</td> </tr> <tr> <td>2년이상 3년미만</td> <td>20%</td> </tr> <tr> <td>3년이상 4년미만</td> <td>20%</td> </tr> <tr> <td>4년이상 5년미만</td> <td>20%</td> </tr> <tr> <td>5년이상 6년미만</td> <td>25%</td> </tr> <tr> <td>6년이상 7년미만</td> <td>30%</td> </tr> <tr> <td>7년이상 8년미만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8년이상 9년미만</td> <td>40%</td> </tr> <tr> <td>9년이상 10년미만</td> <td>45%</td> </tr> <tr> <td>10년이상</td> <td>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근무연수	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	1년미만	10%	1년이상 2년미만	10%	2년이상 3년미만	20%	3년이상 4년미만	20%	4년이상 5년미만	20%	5년이상 6년미만	25%	6년이상 7년미만	30%	7년이상 8년미만	35%	8년이상 9년미만	40%	9년이상 10년미만	45%	10년이상	50%	<p>(가산금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근무연수</th> <th>지급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년 이상</td> <td>10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5년 이상 20년 미만</td> <td>8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0년 이상 15년 미만</td> <td>60,000원</td> <td>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 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 10년 미만</td> <td>5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년 미만</td> <td>3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추가 가산금)</p> <p>※ 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.</li> <li>근무연수라 함은 실제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.</li> </ol>	근무연수	지급액	비고	20년 이상	100,000원		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	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 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	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	5년 미만	30,000원	
근무연수	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미만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이상 2년미만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이상 3년미만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이상 4년미만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이상 5년미만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이상 6년미만	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년이상 7년미만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년이상 8년미만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년이상 9년미만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년이상 10년미만	4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년이상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무연수	지급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년 이상	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 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미만	3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3조와 별표 7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평균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<u>장기근속수당</u> , 경주수당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직책수행비, 시간외수당, 연차수당, 기말수당, 출납수당, 특정업무수행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,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하계체력단련비, 봉급조정수당,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	8. “평균임금”이라 함은 기본급, 직무수당, <u>장기근속수당(가산금포함)</u> , <u>가족수당</u> , 경주수당, 교통비, 직급보조비, 급식보조비, 직책수행비, 시간외수당, 연차수당, 기말수당, 출납수당, 특정업무수행비, 기술업무수당(가산금포함), 정근수당, 명절휴가비, 하계체력단련비, 봉급조정수당,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제43조(가족수당)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,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	제43조(가족수당)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,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1. 배우자 : 월 4만원	1. 배우자 : 월 4만원

## 2. 자녀

가. 첫째 자녀 : 월 3만원

나. 둘째 자녀 : 월 7만원

다. 셋째 이후 자녀 : 1명당 월 11만원

3.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
: 1명당 월 2만원

② (생 략)

## 〈 신 설 〉

## 2. 자녀

가. 첫째 자녀 : 월 5만원

나. 둘째 자녀 : 월 8만원

다. 셋째 이후 자녀 : 1명당 월 12만원

3.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
: 1명당 월 2만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6조의5(업무대행수당) ① 병가, 출  
산휴가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육아휴  
직, 공무상 질병휴직(병가, 휴가, 육아  
휴직의 경우에는 30일 이상, 공무상  
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)의  
업무를 실제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 
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  
대행 수당을 업무대행직원 수로 나눠  
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이 업무대행직원지정을  
하는 경우에는 피업무대행직원, 대  
행기간, 대행업무를 명시하여 5인  
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복직, 복  
귀, 전보,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  
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 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업무대행직  
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## 신·구 별표 대비표

### (현 행)

구분	지급율 및 지급금액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, 7월 월 봉급액 및 근무연수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제한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</li> <li>지급기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근무연수</th> <th>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년미만</td><td><u>미지급</u></td></tr> <tr><td>1년이상 2년미만</td><td><u>5%</u></td></tr> <tr><td>2년이상 3년미만</td><td><u>10%</u></td></tr> <tr><td>3년이상 4년미만</td><td><u>15%</u></td></tr> <tr><td>4년이상 5년미만</td><td><u>20%</u></td></tr> <tr><td>5년이상 6년미만</td><td><u>25%</u></td></tr> <tr><td>6년이상 7년미만</td><td><u>30%</u></td></tr> <tr><td>7년이상 8년미만</td><td><u>35%</u></td></tr> <tr><td>8년이상 9년미만</td><td><u>40%</u></td></tr> <tr><td>9년이상 10년미만</td><td><u>45%</u></td></tr> <tr><td>10년이상</td><td><u>50%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근무연수	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	1년미만	<u>미지급</u>	1년이상 2년미만	<u>5%</u>	2년이상 3년미만	<u>10%</u>	3년이상 4년미만	<u>15%</u>	4년이상 5년미만	<u>20%</u>	5년이상 6년미만	<u>25%</u>	6년이상 7년미만	<u>30%</u>	7년이상 8년미만	<u>35%</u>	8년이상 9년미만	<u>40%</u>	9년이상 10년미만	<u>45%</u>	10년이상	<u>50%</u>	<p>(가산금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근무연수</th> <th>지급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20년 이상</td><td>100,000원</td><td rowspan="5" style="vertical-align: top; font-size: small;">           (추가 가산금)          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기산하여 지급한다.         </td></tr> <tr><td>15년 이상 20년 미만</td><td>80,000원</td></tr> <tr><td>10년 이상 15년 미만</td><td>60,000원</td></tr> <tr><td>5년 이상 10년 미만</td><td>50,000원</td></tr> <tr><td>&lt;신설&gt;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근무연수	지급액	비 고	20년 이상	100,000원	(추가 가산금)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기산하여 지급한다.	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<신설>	
근무연수	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미만	<u>미지급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이상 2년미만	<u>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이상 3년미만	<u>1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이상 4년미만	<u>1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이상 5년미만	<u>2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이상 6년미만	<u>2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년이상 7년미만	<u>3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년이상 8년미만	<u>3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년이상 9년미만	<u>4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년이상 10년미만	<u>4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년이상	<u>5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무연수	지급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년 이상	100,000원	(추가 가산금)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기산하여 지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근 수당			<p>※ 비 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.</li> <li>근무연수라 함은 실제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.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 (개정안)

구분	지급율 및 지급금액		(1) 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, 7월 월 봉급액 및 근무연수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제한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</li> <li>지급기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근무연수</th> <th>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년미만</td><td><u>10%</u></td></tr> <tr><td>1년이상 2년미만</td><td><u>10%</u></td></tr> <tr><td>2년이상 3년미만</td><td><u>20%</u></td></tr> <tr><td>3년이상 4년미만</td><td><u>20%</u></td></tr> <tr><td>4년이상 5년미만</td><td><u>20%</u></td></tr> <tr><td>5년이상 6년미만</td><td><u>25%</u></td></tr> <tr><td>6년이상 7년미만</td><td><u>30%</u></td></tr> <tr><td>7년이상 8년미만</td><td><u>35%</u></td></tr> <tr><td>8년이상 9년미만</td><td><u>40%</u></td></tr> <tr><td>9년이상 10년미만</td><td><u>45%</u></td></tr> <tr><td>10년이상</td><td><u>50%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	근무연수	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	1년미만	<u>10%</u>	1년이상 2년미만	<u>10%</u>	2년이상 3년미만	<u>20%</u>	3년이상 4년미만	<u>20%</u>	4년이상 5년미만	<u>20%</u>	5년이상 6년미만	<u>25%</u>	6년이상 7년미만	<u>30%</u>	7년이상 8년미만	<u>35%</u>	8년이상 9년미만	<u>40%</u>	9년이상 10년미만	<u>45%</u>	10년이상	<u>50%</u>
근무연수	지급률(월 봉급액 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미만	<u>1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이상 2년미만	<u>1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이상 3년미만	<u>2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이상 4년미만	<u>2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이상 5년미만	<u>2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이상 6년미만	<u>2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6년이상 7년미만	<u>3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7년이상 8년미만	<u>3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8년이상 9년미만	<u>4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9년이상 10년미만	<u>45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년이상	<u>50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근 수당			<p>(가산금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근무연수</th> <th>지급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20년 이상</td><td>100,000원</td><td rowspan="5" style="vertical-align: top; font-size: small;">           (추가 가산금)          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기산하여 지급한다.         </td></tr> <tr><td>15년 이상 20년 미만</td><td>80,000원</td></tr> <tr><td>10년 이상 15년 미만</td><td>60,000원</td></tr> <tr><td>5년 이상 10년 미만</td><td>50,000원</td></tr> <tr><td>5년 미만</td><td>30,000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 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.</li> <li>근무연수라 함은 실제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.</li> </ol>	근무연수	지급액	비 고	20년 이상	100,000원	(추가 가산금)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기산하여 지급한다.	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5년 미만	30,000원										
근무연수	지급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
20년 이상	100,000원	(추가 가산금)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,000원,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,000원을 기산하여 지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
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미만	3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

의안번호	제2호
의안제목	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 사회부의안

---

## 1. 제안이유

---

### 2025년 1~2/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결과 반영

- 보수규정 준용,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대행수당 신설

## 2. 주요내용

---

### [별표 6]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지급기준 업무대행수당란 신설

- 「보수규정」 제46조의5(업무대행수당) 준용

- 월 지급금액 20만원, 근무일수별 비례적용 후 업무대행인원수로 나눠 지급

- 주 5일 근무자 : 일반직과 동일
- 주 4일 근무자 : 일반직의 80%
- 주 3일 근무자 : 일반직의 60%
- 주 2일 근무자 : 일반직의 40%

## 3. 참고내용

---

### 신·구 별표 대비표

##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중 가족수당란 다음에 업무대행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업무대행수당	공무직	<p>·보수규정 제46조의5(업무대행수당) 준용 (월 지급액 근무일수별 비례 적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주5일: 일반직과 동일</li><li>- 주4일: 일반직의 80%</li><li>- 주3일: 일반직의 60%</li><li>- 주2일: 일반직의 40%</li></ul>	·공통
--------	-----	---	-----

#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별 표 대비 표

### (현 행)

구분	대상	지급기준	비고
연차수당	소정근로일 80% 근무자	·통상임금×소정근로시간/40	·공통
	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	·통상임금×소정근로시간/40	·공통
주휴수당	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	·통상임금×소정근로시간/40	·공통
출납수당	수납원, 회계업무수행자	·월 20,000원	·공통
가족수당	공무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보수규정 제43조(가족수당) 준용 (근무일수별 비례 적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5일: 일반직과 동일</li> <li>- 주4일: 일반직의 80%</li> <li>- 주3일: 일반직의 60%</li> <li>- 주2일: 일반직의 40%</li> </ul> </li> </ul>	·공통
〈신 설〉			
심판수당	심판(검차포함)업무자격증 소지자	·월 80,000원	·경륜사업

### (개 정 암)

구분	대상	지급기준	비고
연차수당	소정근로일 80% 근무자	·통상임금×소정근로시간/40	·공통
	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	·통상임금×소정근로시간/40	·공통
주휴수당	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	·통상임금×소정근로시간/40	·공통
출납수당	수납원, 회계업무수행자	·월 20,000원	·공통
가족수당	공무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보수규정 제43조(가족수당) 준용 (근무일수별 비례 적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5일: 일반직과 동일</li> <li>- 주4일: 일반직의 80%</li> <li>- 주3일: 일반직의 60%</li> <li>- 주2일: 일반직의 40%</li> </ul> </li> </ul>	·공통
업무대행수당	공무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보수규정 제46조의5(업무대행수당) 준용 (월 지급액 근무일수별 비례 적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5일: 일반직과 동일</li> <li>- 주4일: 일반직의 80%</li> <li>- 주3일: 일반직의 60%</li> <li>- 주2일: 일반직의 40%</li> </ul> </li> </ul>	·공통
심판수당	심판(검차포함)업무자격증 소지자	·월 80,000원	·경륜사업

의안번호	제3호
의안제목	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 사회부의안

## 1. 제안이유

- 2025년 3/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결과 반영**
  - 능력과 실적을 통한 공단 경쟁력 향상, 하위직급 사기진작 등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
  - 개정 주요내용
    - 공무원 7, 8, 9급 승진 최저 연수 : 해당 계급 1년 이상 재직  
⇒ 7, 8, 9급의 승진 최저 연수를 1년 6개월에서 각각 6개월씩 단축하여 하위직급 사기진작 및 공직 내 적극적 업무 유인 강화 도모

## 2. 주요내용

- 제23조 [승진소요 최저연수]제1항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일부개정**

당 초	개 정
바. 7급에서 6급 : <u>1년 6월 이상</u>	바. 7급에서 6급 : <u>1년 이상</u>
사. 8급에서 7급 : <u>1년 6월 이상</u>	사. 8급에서 7급 : <u>1년 이상</u>
아. 9급에서 8급 : <u>1년 6월 이상</u>	아. 9급에서 8급 : <u>1년 이상</u>

## 3. 참고내용

- 신 · 구 조문 대비표**
-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현행 공단 규정 비교**
-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(2025. 7. 7.)**

## 현행, 공단 인사규정 제23조

제23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단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승진한다.

### 1. 일 반 직

- 가. 2급에서 1급 : 3년 이상
- 나. 3급에서 2급 : 3년 이상
- 다. 4급에서 3급 : 3년 이상
- 라. 5급에서 4급 : 2년 6월 이상
- 마. 6급에서 5급 : 2년 이상
- 바. 7급에서 6급 : 1년 6월 이상
- 사. 8급에서 7급 : 1년 6월 이상
- 아. 9급에서 8급 : 1년 6월 이상

## 지방공무원 임용령(2024.06.27.)일부개정

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.
- 1. 3급 이상 : 2년 이상
  - 2. 4급 및 5급 : 3년 이상
  - 3. 6급 : 2년 이상
  - 4. 7급, 8급 및 9급 : 1년 이상

##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(2025.07.07.)

### 라. 인사원칙의 사전공개

- 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승진·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,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

## 인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

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바. 7급에서 6급 : 1년 이상

사. 8급에서 7급 : 1년 이상

아. 9급에서 8급 : 1년 이상

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승인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승진 한다.	제23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승진 한다.
1. 일 반 직	1. 일 반 직
가. 2급에서 1급 : 3년 이상	가. 2급에서 1급 : 3년 이상
나. 3급에서 2급 : 3년 이상	나. 3급에서 2급 : 3년 이상
다. 4급에서 3급 : 3년 이상	다. 4급에서 3급 : 3년 이상
라. 5급에서 4급 : 2년 6월 이상	라. 5급에서 4급 : 2년 6월 이상
마. 6급에서 5급 : 2년 이상	마. 6급에서 5급 : 2년 이상
바. 7급에서 6급 : <u>1년 6월 이상</u>	바. 7급에서 6급 : <u>1년 이상</u>
사. 8급에서 7급 : <u>1년 6월 이상</u>	사. 8급에서 7급 : <u>1년 이상</u>
아. 9급에서 8급 : <u>1년 6월 이상</u>	아. 9급에서 8급 : <u>1년 이상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의안번호	제4호
의안제목	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 사회부의안

## 1. 제안이유

### □ 공공기관의 법률 고문변호사 선정·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

- 법률고문의 위촉기준 절차 개정을 통한 자의적(내부 인사와의 친소관계, 감독기관 청탁 등) 위촉 또는 선임과정의 불투명성에 따른 특혜논란 차단
- 법률고문 위촉관련 결격사유 신설을 통한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

## 2. 주요내용

### □ 제4조(법률고문) 조항 개정 및 신설

- 제4조 조문제목 일부개정
  - 당초) 법률고문 ⇒ 개정) 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
- 제4조제1항 일부개정

당 초	공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개 정	공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 공개모집 또는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- 제4조제3항 전부개정

당 초	고문변호사의 임기는 공단 회계연도와 같이하되, 연도 중간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연도 말에 종료한다. 다만,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시로 한다.
개 정	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소송이 끝나는 때로 한다.

- 제4조제5항 신설

신 설	공단은 법률고문이 될 자가 수임비리, 금품·향응 제공, 청탁 등의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.
-----	--

### 3. 참고내용

---

##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##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) ① 공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 공개모집 또는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, 공단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.

③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소송이 끝나는 때로 한다.

④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⑤ 공단은 법률고문이 될 자가 수임비리, 금품·향응 제공, 청탁 등의 부패 행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, 그 밖에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는 2025년 8월 1일 이후 위촉된 자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법률고문) ① 공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</u>	<u>제4조(법률고문의 위촉 및 결격사유)</u> <u>① 공단은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 공개모집 또는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u>
<u>②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, 공단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.</u>	<u>②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, 공단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한다.</u>
<u>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공단 회계연도와 같이하되, 연도 중간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연도 말에 종료한다. 다만,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시로 한다.</u>	<u>③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소송이 끝나는 때로 한다.</u>
<u>④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	<u>④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

## < 신 설 >

⑤ 공단은 법률고문이 될 자가 수임비리, 금품·향응 제공, 청탁 등의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, 그 밖에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위촉 할 수 없다.

의안번호	제5호
의안제목	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사회부의안

## 1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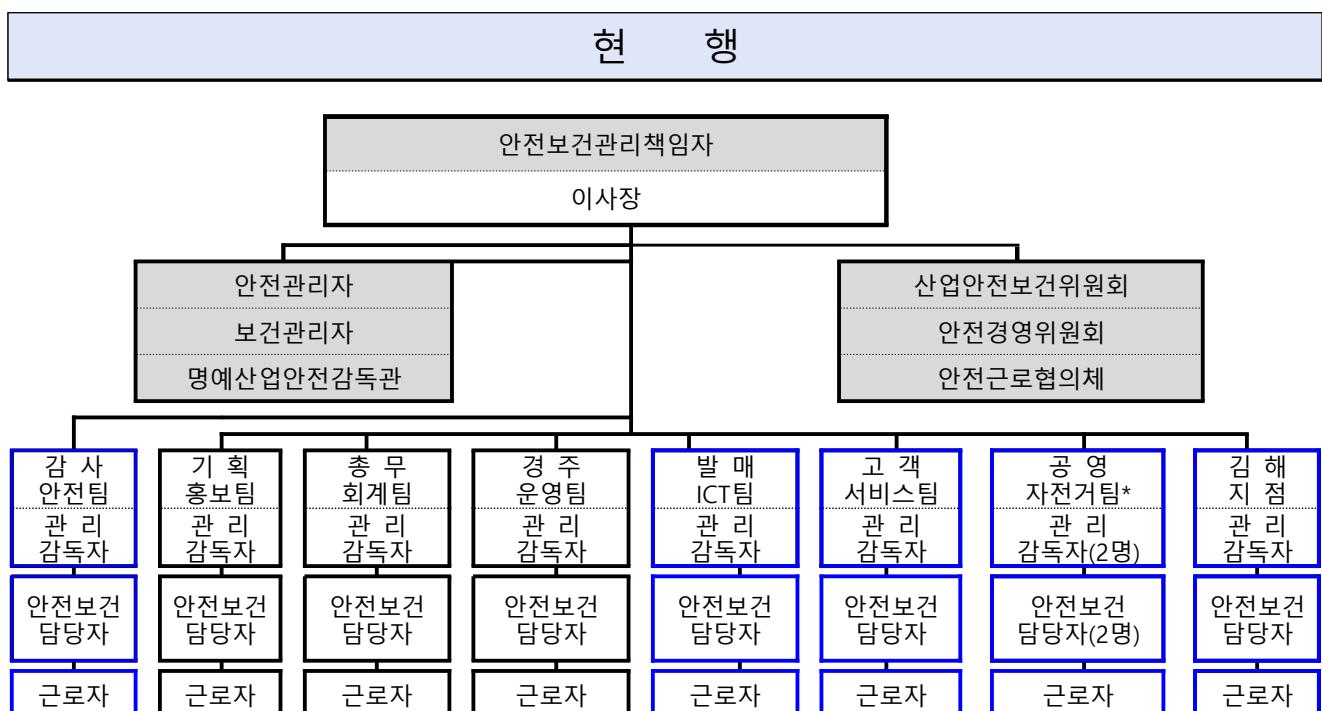
### □ '25. 7. 1. 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리조직 협행화'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  -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
- 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협행화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 강화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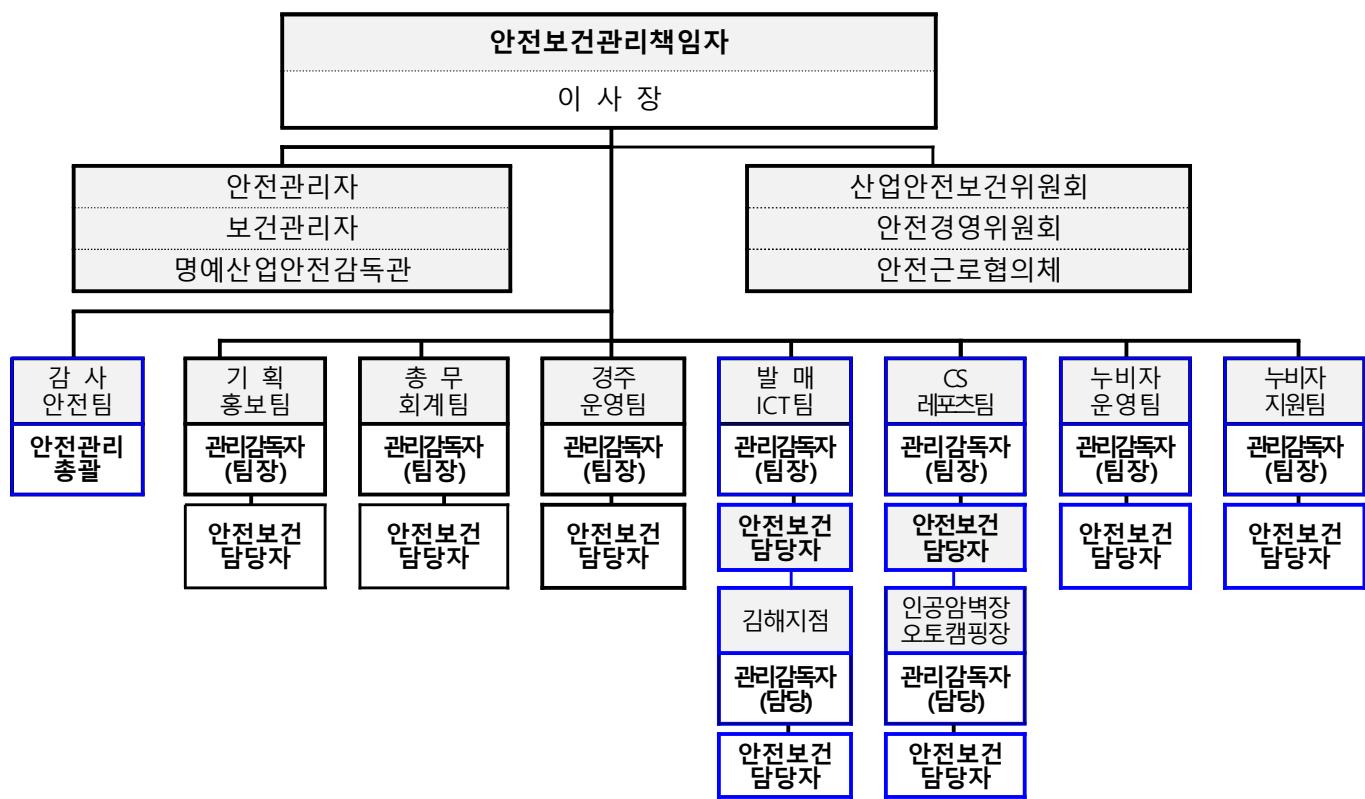
## 2. 주요내용

### □ [별표 1]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일부개정

- 감사안전팀 : 안전관리 총괄
- 발매ICT팀(통합) : 발매ICT팀 + 김해지점(담당 체제로 전환)
- CS레포츠팀(신설) : 고객서비스팀 + 레포츠사업팀(오토캠핑장 + 인공암벽장)
- 공영자전거팀(분리) : 공영자전거팀 ⇒ 누비자운영팀 + 누비자지원팀



## 개정(안)



### 3. 참고내용

#### □ 신·구 별표 대비표

##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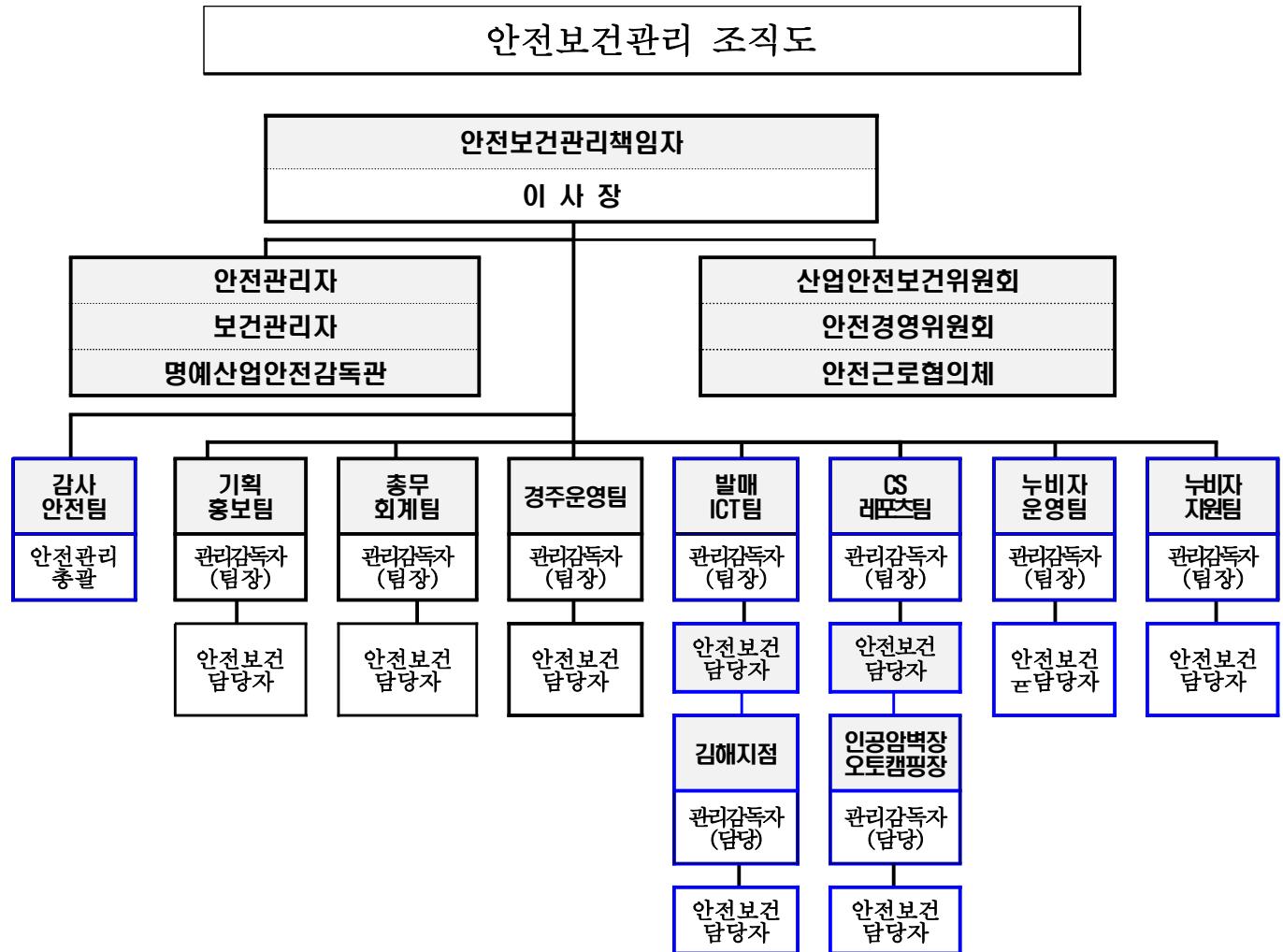
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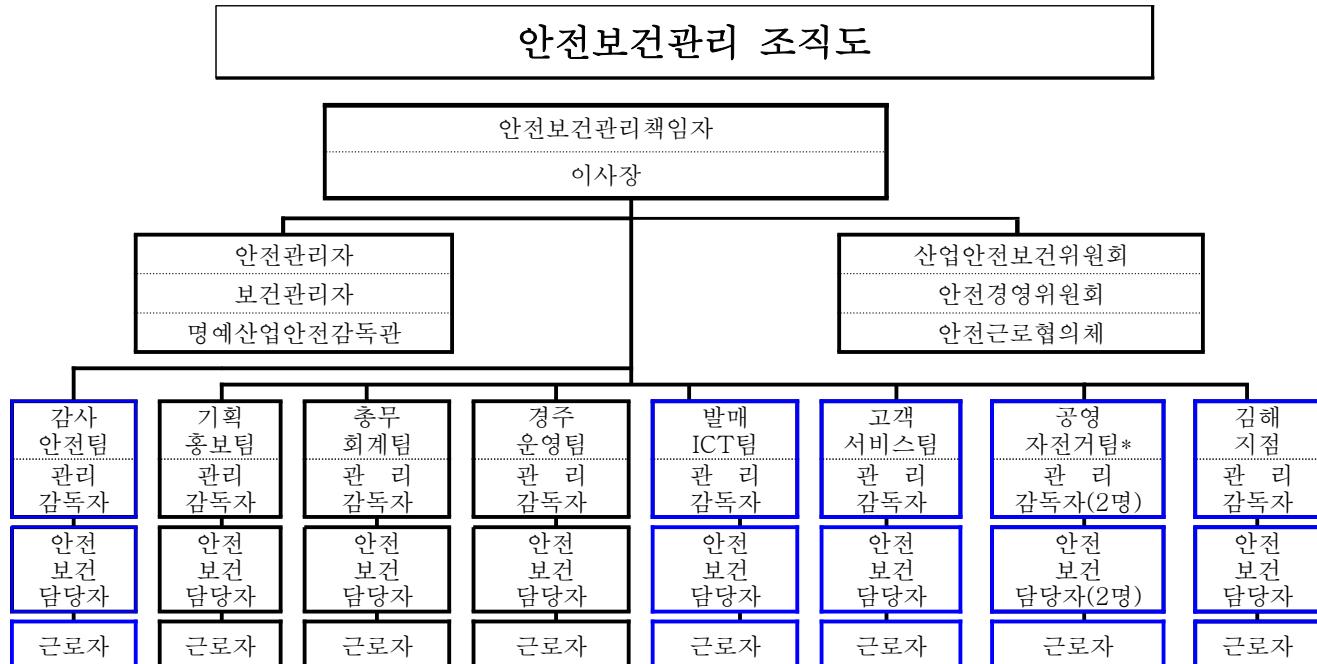
[별표 1]



## 신·구 별표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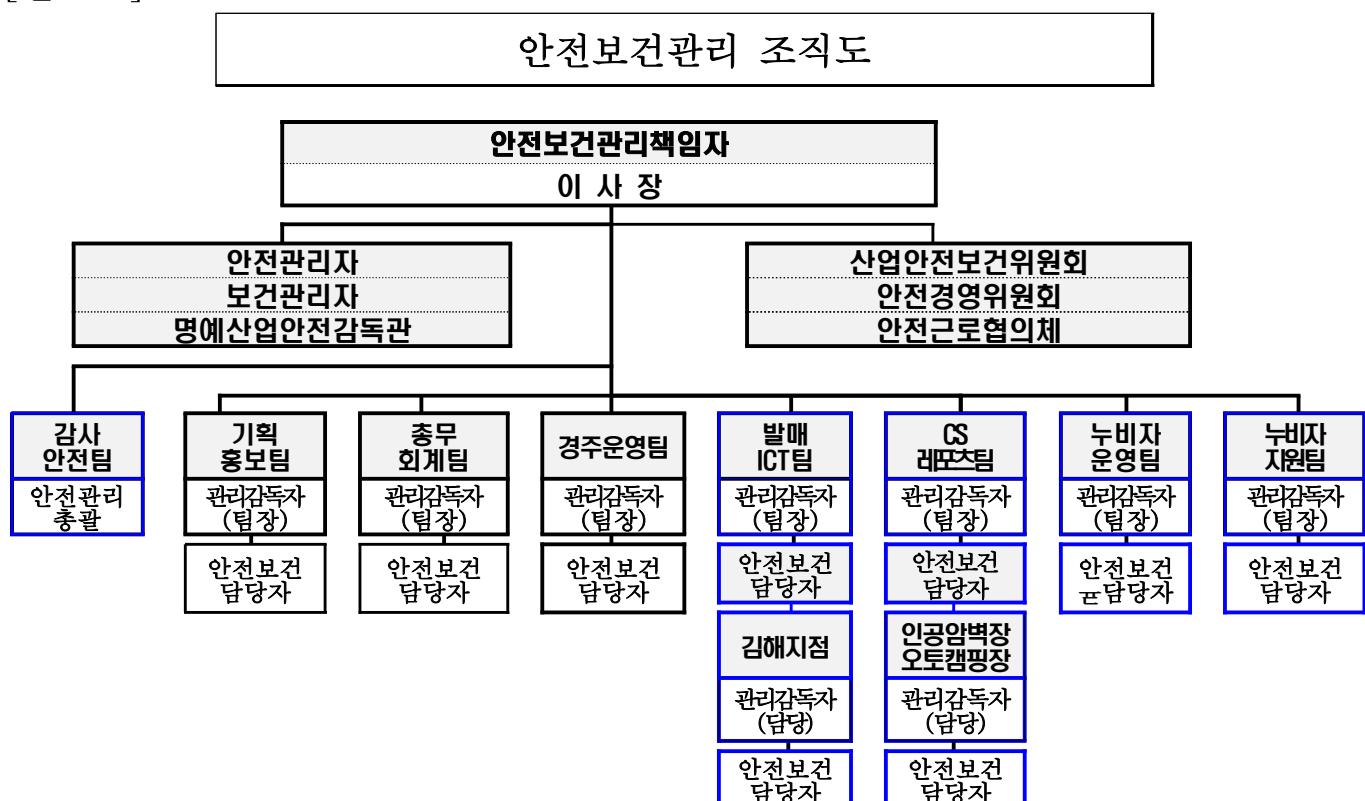
(현 행)

[별표 1]



(개정안)

[별표 1]



의안번호	제6호
의안제목	경륜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 사회부의안

## 1. 제안이유

- 경륜 3개 시행체별 경륜관련규정 일원화를 통한 경주운영의 공정성 및 통일성 유지
- 현행 경륜관련 규정의 운영 실태와 불일치된 조항 및 표현 수정

## 2. 주요내용

### 제4조(경주의 수) 일부개정

- 1일 개최 가능 경주 수 개정

당 초	공단이 개최하는 경주의 수는 1일 20회 이내로 한다.
개 정	공단이 개최하는 경주의 수는 1일 20회 이내로 하되, 1일 20회 초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3. 참고내용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## 경륜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경륜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한다”를 “하되, 1일 20회 초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경주의 수) 공단이 개최하는 경 주의 수는 1일 20회 이내로 <u>한다.</u>	제4조(경주의 수) 공단이 개최하는 경 주의 수는 1일 20회 이내로 <u>하되, 1일</u> <u>20회 초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</u>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</u> <u>한다.</u>

의안번호	제7호
의안제목	경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 사회부의안

## 1. 제안이유

- 경륜 3개 시행체별 경륜관련규정 일원화를 통한 경주운영의 공정성 및 통일성 유지
- 현행 경륜관련 규정의 운영 실태와 불일치된 조항 및 표현 수정

## 2. 주요내용

### 제31조(등록) 제9항 신설

- 심판 재등록 검정 관련 조항 신설

신 설	⑨ 진흥공단은 재등록 검정을 실시하는 날 기준으로, 최근 1년 이내에 경륜심판 업무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륜심판에게는 제5항제1호의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경륜심판 자격 취득 후 최초 재등록하는 경륜심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----	--

### [별표 1] 신체검사합격기준 일부개정

- 신체검사합격기준표 중 경륜심판의 안과검사 및 기타란 일부개정

구 분	당 초	개 정
안과검사	<u>2. 색신이 정상일 것</u>	<u>2. 색맹이 아닐 것</u>
기 타	<u>1. 성병이 없을 것</u>	<u>1. &lt; 삭 제 &gt;</u>

## 3. 참고내용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 및 신·구 별표 대비표

## 경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경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진흥공단은 재등록 검정을 실시하는 날 기준으로, 최근 1년 이내에 경륜심판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륜심판에게는 제5항제1호의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경륜심판 자격 취득 후 최초 재등록하는 경륜심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1 중 안과검사의 심판란 중 “2. 색신이 정상일 것”을 “2. 색맹이 아닐 것”으로 하고, 기타의 심판란 중 “1. 성병이 없을 것”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등록) ① ~ ⑧ (생 략)</p> <p>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제31조(등록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⑨ 진흥공단은 재등록 검정을 실시하는 날 기준으로, 최근 1년 이내에 경륜심판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륜심판에게는 제5항제1호의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경륜심판 자격 취득 후 최초 재등록하는 경륜심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
## 신·구 별표 대비표

(현 행)

### 신체검사합격기준

검사항목	합격기준	
	심판	선수
안과검사	1. 교정시력이 두눈으로 0.8이상이고 또한 한눈으로 각각 0.3이상일 것 <u>2. 색신이 정상일 것</u>	1. 교정시력이 두눈으로 0.8이상이고 또한 한눈으로 각각 0.5이상일 것 2. 백색, 흑색, 적색, 청색과 황색의 식별이 가능할 것
기타	<u>1. 성병이 없을 것</u> 2. 정신이상, 간질 및 그 밖의 신경 장애가 없을 것 3. 그 밖에 심판집무에 지장을 줄 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	1. 성병이 없을 것 2. 정신이상, 간질 및 그 밖의 신경 장애가 없을 것 3. 수면약 또는 각성제 상용에 따른 장애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 4. 경주중 전도 등의 상해에 따른 후유증이 없을 것 5. 그 밖에 경주에 지장을 줄 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

(개정안)

### 신체검사합격기준

검사항목	합격기준	
	심판	선수
안과검사	1. 교정시력이 두눈으로 0.8이상이고 또한 한눈으로 각각 0.3이상일 것 <u>2. 색맹이 아닐 것</u>	1. 교정시력이 두눈으로 0.8이상이고 또한 한눈으로 각각 0.5이상일 것 2. 백색, 흑색, 적색, 청색과 황색의 식별이 가능할 것
기타	<u>1. &lt;삭제&gt;</u> 2. 정신이상, 간질 및 그 밖의 신경 장애가 없을 것 3. 그 밖에 심판집무에 지장을 줄 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	1. 성병이 없을 것 2. 정신이상, 간질 및 그 밖의 신경 장애가 없을 것 3. 수면약 또는 각성제 상용에 따른 장애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 4. 경주중 전도 등의 상해에 따른 후유증이 없을 것 5. 그 밖에 경주에 지장을 줄 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

의안번호	제8호
의안제목	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의결결과	원안가결

# 이사회부의안

## 1. 제안이유

### □ 2025년도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반영

- 사업내용 : 공단 사이클팀 운영(감독 1, 선수 3) 운영보조금(경상남도체육회)
- 보조금/사업기간 : 270,000천원 / 2025. 4월 ~ 12월
- 예산용도 : 사이클팀 급여,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, 훈련장비 구입 등  
※ 경상남도체육회 전문체육팀-1546(2025. 4. 1.)호 「2025년도 창원레포츠파크 직장운동경기부  
(자전거) 운영비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」

### □ 2025년도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기정예산 증감 조정

- 집행잔액, 낙찰잔액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부족 사업 확보

## 2. 주요내용

### □ 총 예산규모 : 32,923,183천원

-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⇒ 기정예산 조정(증감 없음)
- 공단 사이클팀 운영 도비보조금 편성 ⇒ 증액(270,000천원) (단위: 천원)

기정예산(a)	추경액			최종예산 (e=a+d)
	증감(d=b-c)	증액(b)	감액(c)	
32,653,183	270,000	270,000	-	32,923,183

< 공단 예산 규모(회계별)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 (A)	기정예산 (B)	증감 (C=A-B)	비 고
계(a+b)	32,923,183	32,653,183	270,000	▪ 증액 : 505,940천원 ▪ 감액 : 235,940천원
특별회계 대행사업비(a)	25,935,030	25,935,030	0	
경륜운영 대행사업비	23,500,000	23,500,000	0	
사업준비금 대행사업비	2,435,030	2,435,030	0	해당없음
일반회계 대행사업비(b)	6,988,153	6,718,153	270,000	
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	6,139,030	6,139,030	0	▪ 기정예산 증감조정 ▪ 증액 : 235,940천원 ▪ 감액 : 235,940천원
도비보조금(이자반환 포함)	270,150	150	270,000	▪ 증액 : 270,000천원
오토캠핑장 대행사업비	281,831	281,831	0	
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	297,142	297,142	0	해당없음

## □ 2025년도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반영

- 공단 사이클팀(감독 1, 선수 3) 운영비 편성
  - (인건비성) 급여, 퇴직급여, 4대보험료, 복지포인트 : 174,984천 원
  - (훈련지원) 식비, 훈련용 차량 유지, 숙소운영비, 헬스장이용료, 유니폼 및 훈련 장비(타이어 등) 구입 : 71,744천 원
  - (기 타) 우수선수 계약금, 주민세 종업원분, 대회출전경비 등 : 23,272천 원

(단위: 천원)

기정예산(a)	추경액			최종예산 (e=a+d)
	증감(d=b-c)	증액(b)	감액(c)	
0	0	270,000	-	270,000

## □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증감 조정

- 기정예산 조정(<sup>증</sup>235,940천 원, <sup>감</sup>235,940천 원)으로 총액변동 없음 (단위: 천원)

기정예산(a)	추경액			최종예산 (e=a+d)
	증감(d=b-c)	증액(b)	감액(c)	
6,139,030	0	235,940	235,940	6,139,030

- 증액 주요내용 : 총 9건, 235,940천 원 증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추경액	세 목	주 요 내 용
증액	235,940	사무관리비 (22,614) 국내여비 (1,391) 일반재료비 (7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누비자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(16,600천원)</li> <li>◦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 부족분(3,000천원)</li> <li>◦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증액(3,014천원)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내여비 부족분 증액(1,391천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정보처리 관련 잣은 출장으로 부족분 발생</li> </ul> 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누비자 정비용 공구 구입 부족분(7,000천원)</li> </ul>

		수선유지비 (103,8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선비 부족분(5,000천원)</li> <li>◦ 자전거문화센터 목재데크 보수공사(36,000천원)</li> <li>◦ 누비자 자전거 베타리 교체(9,000천원)</li> <li>◦ 누비자 정비용 부품 구입 부족분(38,840천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포크, 구동부(체인 등 2종), 제동부(브레이크 등 2종), 주행부(전륜휠 등 2종), 기타 부품(바구니 등 5종)</li> </ul> </li> <li>◦ 누비자 중앙센터 시설물 수선유지(15,000천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철제휀스 등 보수</li> <li>- 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위험성 평가 지적사항 이행</li> </ul> </li> </ul>
		직급보조비 (3,2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'25. 7. 1.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반직 직급보조비 부족분(3,200천원)</li> </ul>

	자산취득비 (86,89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전거문화센터 어린이 이색자전거 5종 구입(<b>4,200천원</b>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캐릭터 더블자전거(수동 1종), 어린이 네발자전거(1종), 1인승 네발카트(1종), 2인승 두발자전거(1종), 어린이 특수자전거 1인승(1종) 등</li> </ul> </li> <li>◦ 윈도우10 종료에 따른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(<b>60,600천원</b>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무용(30대), 정비용(2대), 그래픽작업용(1대), 시스템개발용 노트북(1대), 자전거홍보관 모니터 4대 등</li> </ul> </li> <li>◦ 혈압자동 측정기 구입(<b>1대, 1,500천원</b>)</li> <li>◦ 상담실 및 사무실 선풍기 구입(3대, <b>195천원</b>)</li> <li>◦ 상담실 제습기 구입(2대, <b>2,000천원</b>)</li> <li>◦ 근골격계 예방기구 구입(3대, <b>15,000천원</b>)</li> <li>◦ 누비자 중앙센터 냉장고 구입(2대, <b>3,400천원</b>)</li> </ul>
	공공요금 및 제세 (2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동차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처리 자기 부담금 증액(<b>2,000천원</b>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말 배송차량 등 사고증가 대비 소액 증액</li> </ul> </li> </ul>
	부서업무비 (1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'25. 7. 1. 직제개편(팀분할 : 공영자전거팀→운영팀, 지원팀)으로 인한 부서업무비 부족분 증액(<b>1,000천원</b>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누비자운영팀 및 지원팀 정원 수 기준으로 편성(예산편성기준)</li> </ul> </li> </ul>
	기타보상금 (8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창원시 생활자전거대행진 주최에 따른 기타보상금 부족분 (<b>8,000천원</b>)</li> </ul>

○ 감액 주요내용 : 총 5건, 235,940천원 감액

(단위: 천원)

구 분	추경액	세 목	주 요 내 용
감액	235,940	지급수수료 (△76,17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영자전거 신규직원 채용수수료(△12,000천원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창원시 합동채용에 따른 공단 채용수수료 미집행분 감액</li> </ul> </li> <li>◦ 누비자 홍보 마케팅 용역 수수료(△20,000천원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취소에 따른 미집행분 감액</li> </ul> </li> <li>◦ 누비자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수수료 낙찰잔액 감액 (<b>△11,578천원</b>)</li> <li>◦ 누비자 홈페이지 및 앱 유지보수 용역 수수료 낙찰잔액 감액 (<b>△3,000천원</b>)</li> <li>◦ 누비자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(△29,600천원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클라우드 관련 정책 변화(데이터 전면이전, 의무적이전 → 우선검토, 선별적 전환)에 따른 미집행분 감액</li> </ul> </li> </ul>
		교육훈련비 (△6,3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스마트러닝 학습비 및 기관 위탁교육비(<b>△6,340천원</b>)</li> </ul>
		공공요금 및 제세 (△20,0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누비자 정보통신망 사용료 불용(△20,000천원)</li> </ul>
		인건비 (△51,18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무직 급여 불용액(<b>△16,771천원</b>)</li> <li>◦ 공무직 시간외 수당 불용액(<b>△25,000천원</b>)</li> <li>◦ 휴일근무수당 불용액(<b>△9,411천원</b>)</li> </ul>
		자산취득비 (△82,2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영자전거 누비자 자전거 구입 낙찰잔액(<b>△82,240천원</b>)</li> </ul>